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정의 변경 등〉
■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121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121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정의 변경(안 제2조)	3
2.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 추가 및 군 공항 이전 사업 등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안 제7조·제8조·제20조)	6
3. 군 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 지정 특례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18
4. 군 공항 이전사업 비용에 대한 선투자 및 보전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	24

□ 박형수의원 대표발의(222012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형수의원 등 21인
2. 제 안 일 : 2026. 7. 23.
3. 회 부 일 : 2026.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방식은,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사업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실현되는 반면, 토지 보상비·설계비 등 대규모 초기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먼저 조달하여야 하는 구조임.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가 보상·설계 등 초기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주변지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군 공항 이전주변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

반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상북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하여 사업 추진체계와 재정기반을 보강하고, 또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국가 지원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며,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토지보상비·설계비 등의 비용을 미리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선 투자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이주정착,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주변지역 개발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Ⅲ. 검토의견

1.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정의 변경(안 제2조)

개정안은 이전주변지역²⁾(대구광역시 군위군 및 경상북도 의성군) 지원사업의 정의를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³⁾의 장(대구광역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에서 「군공항이전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¹⁾ 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 -----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관련 사전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완료한

현행	개정안
	사업 절차는 이 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완료한 것으로 본다.

가. 검토의견

현행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군공항이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고, 「군공항이전법」 제11조는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정의를 현행 “「군공항이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대구광역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에서 “「군공항이전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은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지원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및 경상북도 의성군 지역을 말한다.

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군 공항 및 대구국제공항이 위치한 대구광역시를 말한다.

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내 중복되는 이번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체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방식은 소관부처인 국방부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국방부

「군공항이전법」 제11조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바, 개정안에 따라 중복되는 주체를 삭제할 경우 주체가 간소화되는 효과는 있으나, 「군공항이전법」을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주체에 대한 혼선이 초래될 위험이 있음.

2.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 추가 및 군 공항 이전 사업 등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안 제7조·제8조·제2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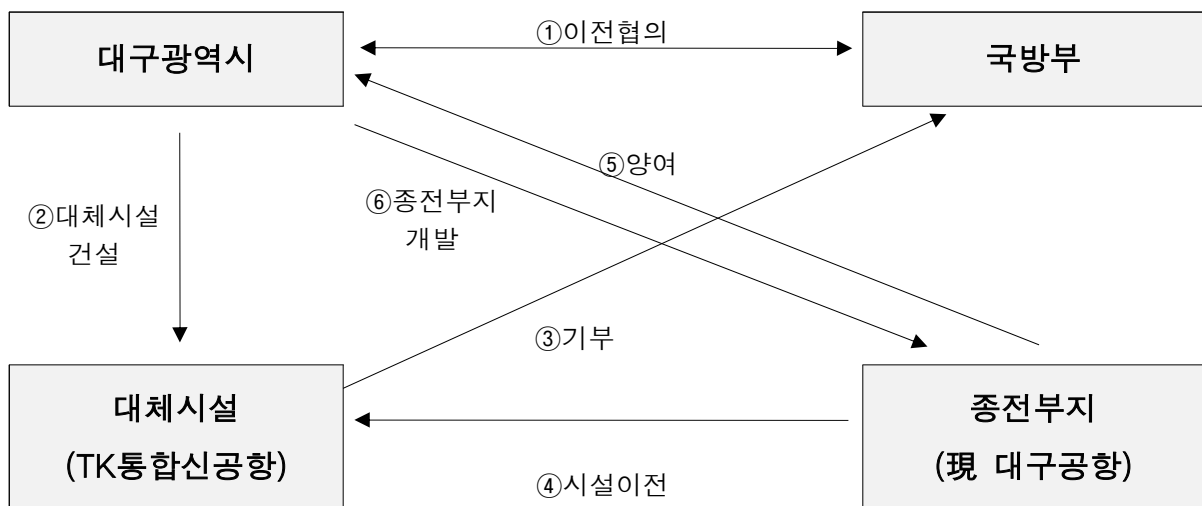
개정안은 ① 군 공항 이전사업의 주체를 현행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부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고, ② 군 공항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의무화하며, ③ 군 공항 이전 사업 및 이전지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 ② (생략)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③ ----- ----- ----- ----- ----- -----하여야 한다.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가. 검토의견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이전사업의 방식 등)⁴⁾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부 및 양여의 특례)⁵⁾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군 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루어짐.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군항) 기부대양여사업 구조 >



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대구동구에 위치한 K2 공군기지와 대구 국제공항을 대구 군위군, 경북 의성군 일원으로 통합이전하여 신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군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시와 국방부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하며, 민항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군공항의 활주로를 연장하고 일부 구역에 터미널을 건설하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임.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개요 >

- (위치) 대구 군위군 소보면 및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원
(~~전체~~ 552만평, 약 18.2km² / 민항 41만평, 약 13.4km²)
- (사업내용) 군 활주로 추가(756m 중, 2,477m→3,500m), 터미널, 계류장 등 민항 건설
- (사업기간/사업비) '24~'30 / 약 14.2조원(민항 2.7조원, 군항 11.5조원)
- (사업방식) 군항기부대양여 방식* / 민항재정사업 방식
* 대구시가 이전부지에 군공항 건설 및 국방부 기부 후,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하는 방식
- (항공수요) '60년 기준 여객수요 1,265만명, 화물수요 23만톤

※ 자료 : 국토교통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추진 경과 >

- '16.8 :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방식 결정(대구공항 통합이전 TF)
- '20.8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대구 군위, 경북 의성) 확정
- '22.9 :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대구시·국방부)
- '23.4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23.8, 시행)

- '23. 9 : 민간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완료
- '23.10 :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23.12 : 민간공항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4.12 : 민간공항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 '25. 1 : 군공항 사업계획 승인
- '25.12 : 민항 총사업비 협의 완료 및 민항 기본계획 수립·고시

※ 자료 : 국토교통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지 매각 전에 이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방식과 달리 기부대양여 방식은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용이한 점,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지 개발에 주도권 및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 방식은 특별회계방식이 아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결정되었음.⁶⁾

다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은 초기 비용을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여야 하고 종전부지 개발이익은 사업후반부에 실현되는데,

6) 제19대국회 제311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2012.9.24.), 제311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2012.11.14.), 제311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12.11.16.)

특히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군 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역량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 사업 장기화, 종전부지 미분양 등 모든 위험을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2025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직속 TF 구성을 건의하고 가시적인 조치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⁷⁾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채택된 바 있음.⁸⁾

이에 개정안은 ① 군 공항 이전사업의 주체를 현행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부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고, ② 군 공항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의무화하며, ③ 군 공항 이전 사업 및 이전지역 주변지역의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먼저, 군 공항 이전 사업시행자의 주체를 현행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부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7) 제22대국회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25.10.13.

8)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026.2.10.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2026.2.12.본회의 의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실 직속 TF (기획재정부 포함) 구성을 대통령실에 건의하고, 이에 따른 가시적인 조치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개정안이 입법화되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실행할 경우 현행보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존에 국방부와 대구광역시가 현행법 및 「군공항이전법」에 근거하여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온 바, 사업시행자 추가로 인해 사업시행자 간 의견 조정 과정에서 현행보다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화는 군 공항 이전의 공동 사업시행자 추가에 따른 재정 확보 가능성, 개정안에 따른 사업의 지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등의 의무화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신공항 이전 예정지는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토지 거래·건축물 신·증축 및 각종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고, 사업 착공이 지연되면서 그에 따른 이주자에 대한 보상 등도 지연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제기되었음.⁹⁾

이에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신공항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이주자를 위한 지원사업 의무화로 현행보다 사업비가 증가하여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화를 고려할 경우 그에 따른 재정확보 마련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이주자는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업을 희망하지 않는 농업인은 농업에 필요한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사업시행자는 이주자에게 이주정착특별지원금으로 세대당 2천만원을, 생활안정특별지원금으로 세대당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음.

9) 대구경북신공항 조속 추진... 군위·의성 ‘한목소리’, 뉴데일리, 2026.8.20.
https://tk.newdaily.co.kr/site/data/html/2026/08/20/2026082000116.amp.html?utm_source=chatgpt.com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이주자 생계 지원>

구분	내용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세대당 2,000만원
생활안정특별지원금	인당 250만원, 세대당 최대 1,000만원
직업전환 희망자	직업훈련·취업알선
농업 종사자	대체농지 알선·영농교육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가능

마지막으로, 군 공항 이전 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비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¹⁰⁾ 및 「군공항이전법」 제9조¹¹⁾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

10) 「국유재산법」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

개정안은 현행 제20조제2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군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에 따라 추진하되, 종전부지의 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개발가치와 사업수익을 이전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 개발가치의 범위 내에서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적·예외적인 사업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사업 추진 방식에 다소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화는 사업시행자 지원 필요성 및 현행 사업방식과의 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

1.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2. 이전부지의 군 공항시설 설치계획

⑤ 이전사업에 필요한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이전사업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처인 국방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2) 경상북도

신공항 사업은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나, 기부대양여 방식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대구시로 명시되어 경상북도는 사업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전지 주민민원 등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와 대구경북 협력사업의 대표모델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작업 시행이 필요함.

3) 국방부

현행법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가 작성한 사업계획 등을 대구광역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사업시행자 협의·지정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하는 등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 또는 사업 지연이 우려됨.

또한, 현행법 제20조제2항에 국가의 초과사업비 지원 규정이 있으므로, 이주자를 위한 지원사업 의무화 시 사업비 증가 우려가 있고, 그 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 종전부지를 개발함에 따라 남는 이익 부분에 대하여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하도록 예외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사업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부대양여 방식에 반할 우려가 있고,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해태할 유인이 있으며, 국가의 초과사업비 지원 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국가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3. 군 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 지정 특례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개정안은 군 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주변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가. 검토의견

자유무역지역이란 외국인투자유치, 무역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1970년 마산을 시작으로 현재 14개의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어 운영 중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정책·제도·법률 등 총괄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관리는 유형별로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음.

<자유무역지역 현황>

구 분			지정일	면 적	관리권자
산단형 (5.81km ²)	마 산	산	'70.1.1.	0.96km ²	산업통상부 (자유무역지역 관리원)
	군 산	산	'00.10.6.	1.26km ²	
	대 불	불	'02.11.21.	1.16km ²	
	동 해	해	'05.12.12.	0.25km ²	
	울 촌	촌	'05.12.12.	0.34km ²	
	울 산	산	'08.12.8.	0.82km ²	
	김 제	제	'09.1.6.	0.99km ²	
	디지털 마산*	산	'24.1.25.	0.03km ²	
항만형 (26.27km ²)	부 산	항	'02.1.1.	12.72km ²	해양수산부 (해양청/항만공사)
	광 양	항	'02.1.1.	9.02km ²	
	인 천	항	'03.1.1.	1.96km ²	
	포 항	항	'08.12.8.	1.14km ²	
	평택당진항	항	'09.3.30.	1.43km ²	
공항형 (3.97km ²)	인 천	공 항	'05.4.6.	3.97km ²	국토교통부 (항공청/공항공사)
합 계				36.05km ²	



* 디지털마산('24.1월 지정)은 현재 조성 추진 중

※ 자료: 국토교통부

현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은 입주기업에 대해 공장임대, 부가가치세 인하, 자유무역지역 내 인프라 제공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지원내용 >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수출중심 인센티브	관세유보	· 관세법상 외국으로 간주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유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 제공
	국유토지·공장 임대 지원	· 입주기업은 50년간 국유지인 자유무역지역의 공장부지와 표준공장을 부지가액의 1% 수준에서 저가 임대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조세감면	· 제조업 1천만불, 물류업 5백만불 이상 투자시 조세 감면 ※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종합소득세 등) 최장 15년간 100% 감면
	임대료 감면	· 지원대상 업종 및 신규 투자규모에 따라, 토지 및 공장 무상임대 또는 75% 감면혜택 10년간 제공
기타 서비스 제공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정부에서 입주상담허가, 공장등록, 건축허가 등 기업입주 및 사후관리 전 과정 일괄처리
	기업지원 인프라 제공	· 정부에서 표준공장, 기숙사 건설, 도로확장 등 자유무역 지역 내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
	고용·경영 관련 규제완화	· 외투기업에 대해 취업보호대상자(고령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고용의무 미적용,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자료: 산업통상부

한편,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내 공항신도시 4개 권역 중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내에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와 저온저장유통시설, 환적화물 확보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음.¹²⁾

12) 경북도, 특별법 제정 이후 공항신도시 조성에 역량 집중, 2023. 4. 17. 경상북도청 보도자료

이에 더하여, 신공항 건설지역뿐만 아니라 주변개발예정지역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공항과 배후지역 간 산업·물류 기능을 연계하고,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음.¹³⁾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법」 제7조¹⁴⁾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¹⁵⁾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

13) 2022.04.0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항공정책자문위원회의

최근 경상북도가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경제특구 지정과 지역산업 연계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신동춘 회장은“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제조와 물류가 융복합된 경북형 자유무역지역 조성이 필요하다.”며, 경제특구의 위치로 ▲신공항 주변 군위·의성지역, ▲기존의 구미 산업단지, ▲군위·의성과 K-2 후적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1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자유무역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背後地)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라.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제7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그 예정지를 포함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예정지역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예정지역의 지정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⑥ 예정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예정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본문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15)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주변개발예정지역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자유무역지역법」 제3조제3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에 지정 특례를 신설하는데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절차로 지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지정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 시행령이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절차를 형해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TK통합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물류기능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산업통상부

자유무역지역은 수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업단지, 공항, 항만 인근에 지정하는 관세유보지역으로 극히 일부 산업단지, 공항, 항만만 지정되어 있음.

현행 「자유무역지역법」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개별법에서 별도의 지정 절차를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현행법 제11조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이 지정목적 및 요건 등에 부합하면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지정이 가능할 것임.

4. 군 공항 이전사업 비용에 대한 선투자 및 보전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군 공항 이전사업에 토지 등의 보상비, 조사·설계비 등을 미리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미리 투자한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2(군 공항 이전사업 비용의 선 투자 및 보전)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등의 보상비, 조사·설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미리 투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¹⁶⁾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¹⁷⁾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투자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전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과 군 공항 이전사업 비용의 정산에 반영한다.

16) 「국유재산법」

가. 검토의견

군 공항 이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군 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루어짐.

그런데, 기부대양여 방식에서는 토지 보상비·조사설계비 등의 초기비용을 시행자가 먼저 조달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역량을 초과하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③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
 1.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2. 이전부지의 군 공항시설 설치계획
- ⑤ 이전사업에 필요한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이전사업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¹⁸⁾

이에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군 공항 이전 사업에 토지 등의 보상비, 조사·설계비 등을 미리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미리 투자한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이전사업을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토지 등의 보상비, 조사·설계비 등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사업 추진 방식은 현행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방식과 다소 배치될 소지가 있고 국가의 투자 비용 보전으로 인하여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전사업 추진 방식 및 개정안의 입법화에 따른 재정확보 마련 방안과 관련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8) "기존 군공항 이전 방식 한계…국가 주도로" 토론회서 한목소리, 2025.11.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24108000054>

나.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처인 국방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2) 국방부

보상비, 조사·설계비를 국가가 보전하는 것은 기부대양여 방식과 재정 방식이 혼용되므로 절차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국가로부터 투자한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비가 과대계상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0
